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운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계층의 일자리
창출을 위해,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
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상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
내 ‘부설주차장’ 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○ 서울특별시는 「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

조례」를 통해,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일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, 이에 동 조례 제2조에서는 영업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.

전통시장의 경우 ‘공영주차장’이 설치된 곳도 있으나,

‘부속주차장’만 설치된 곳도 다수 존재하여

유희상태의 전통시장 주차장에 절대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

이에 본 의원은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,

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중 「주차장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조 등에 부합하는 ‘부설주차장’에 한해,

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판단을 해당 자치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본 개정안을 통해

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전통시장 및 자치구는 유희상태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「주차장법」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요와

제반여건 등을 반영하여 ‘지역의 사정’에 따라 ‘일시적인
경우’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본 조례의 제정 취지처럼,

개성과 실력이 있는 청년·취약 계층의 상인들이

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통해 지역의 명물이 되고,

전통시장에도 젊은 이용객을 유도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
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